

	직 제 규 정	제 정 일	1997. 6.19
		개 정 일	2024. 2. 5
		개정차수	44차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인정관 및 학칙에 의하여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교의 직제에 관하여는 정관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 3조 (기구) 본교의 기구 및 부서별 편제는 별표 1과 같다.

제 4조 (정원) 본교 교직원의 정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조 (교직원) ① 본교에 총장과 다음 각 호의 교직원을 둔다. (개정 2009. 2.13)

1. 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개정 2012. 7.22, 2019. 8. 1)

2. 직원 : 일반직, 기술직 (개정 2012. 7.22, 2014. 3. 1)

3. 조교 (개정 2012. 7.22)

② 제1항의 교직원 외에 필요시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특임교수,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 3. 1, 2019. 8. 1, 2020. 1. 1)

제 2 장 총장, 부총장 [제목개정 2009. 2.13, 2019. 1. 1]

제 6조 (총장) ① 본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 2.13)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합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9. 2.13)

③ 총장의 임명과 임기에 관하여는 법인정관 제6장 39조 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2.13)

④ 총장의 직무 대행은 부총장, 교무처장, 산학취업처장 순위로 수행한다. (개정 2019. 1. 1, 2021. 4.15)

제 6조의 2 (부총장) ① 본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부총장의 임기는 제22조에 따른다.

③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 3 장 대 학 본 부

- 제 7조 (대학본부) ① 본교에 산학취업처,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국 외에 별도의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07. 8.16, 2014. 1. 1, 2014.11. 1, 2021. 4.15)
② 사무국장은 5급(부참사)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나 5급(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그 외의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8.16, 2014. 1. 1, 2014. 5. 1, 2024. 2. 1)
③ 대학본부에는 필요에 따라 책임교수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4. 5. 1)
- 제 8조 (산학취업처) 산학취업처에는 산학협력과, DU일자리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6급(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하고,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8. 1, 2012. 7.22, 2014. 1. 1, 2014.11. 1, 2018. 4. 1, 2019. 3. 1, 2020. 5. 1, 2020.11. 1, 2022. 3. 1)
- 제 9조 (교무처) 교무처에는 학사운영과, 교육혁신지원센터, 교양교육센터, 학사학위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며 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7.22, 2014.11. 1, 2016. 9. 1, 2019. 3. 1, 2019.11. 1, 2021. 4.15)
- [제목개정 2021. 4.15]
- 제 9조의 2 (입학홍보처) ① 입학홍보처에는 입학홍보과와 미디어센터를 두며 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② 입학홍보처에는 고교홍보지원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6. 1)
- [본조신설 2021. 4. 15]
- 제10조 (학생처) 학생처에는 학생서비스과, 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산관, 인권센터를 두며 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 및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7.22, 2014.11. 1, 2022. 5. 1, 2022.10. 1)
- 제11조 (기획처) 기획처에는 기획예산과, 국제협력센터를 두며 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하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삭제 2007. 8.16, 개정 2014.11. 1, 2015. 5. 1, 2016. 9. 1, 2020. 1. 1)
- 제12조 (사무국) 사무국에는 행정지원과, 경리과,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7.22, 2014.11. 1, 2018. 4. 1)
- 제13조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에는 특화산업지원센터, 공유협업지원센터, 공동장비운영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6급(주사)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 4. 1, 2012. 7.22, 2013. 2. 1, 2014.11. 1, 2018. 6. 1, 2019. 4. 1, 2019. 6. 1, 2019. 7. 1, 2022. 3. 1, 2022.12. 1, 2024. 2. 5)

제 4 장 직 속 기 관 [장신설 2014.11. 1]

제13조의 2 (삭제 2016. 9. 1)

제13조의 3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에는 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6급(주사)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 1, 2024. 2. 1)

[본조신설 2014.11. 1]

제13조의 4 (LINC3.0사업단) 총장 직속기구로 LINC3.0사업단을 두며, 사업단장 및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하며, LINC3.0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4. 1, 2022. 3. 1, 2024. 2. 1)

[본조신설 2017. 7. 1, 제목개정 2022. 3. 1]

제13조의 5 (혁신지원단) 총장 직속기구로 혁신지원단을 두고, 혁신지원단 하부조직으로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 메타버스교육센터를 두며, 단장 및 부단장과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5. 1, 2022. 7. 1, 2024. 2. 1)

[본조신설 2019. 7. 1]

제13조의 6 (신산업특화사업단) 총장 직속기구로 신산업특화사업단을 두며, 단장 및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2. 1)

[본조신설 2021. 7. 1]

제13조의 7 (시설사업단) 총장 직속기구로 시설사업단을 두며,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2. 1)

[본조신설 2022. 5. 1]

제13조의 8 (SDS HiVE센터) 총장 직속기구로 SDS HiVE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2. 1)

[본조신설 2022. 7. 1]

제13조의 9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총장 직속기구로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5]

제 5 장 학부, 학과

제14조 (학부, 학과) ① 각 학부와 학과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부장과 학과장은 둔다.
② 학부장 및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2. 7.22, 2014. 5.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부 속 기 관

제15조 (삭제 2021. 1. 1)

제15조의 2 (정보지원센터) ① 정보지원센터에는 학술정보과와 전산정보과를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6급(주사)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②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

제16조 (삭제 2021. 1. 1)

제16조의 2 (삭제 2009. 3. 1)

제16조의 3 (삭제 2021. 4.15)

제17조 (삭제 2007.10. 1)

제18조 (삭제 2007.10. 1)

제18조의 2 (삭제 2014. 1. 1)

제19조 (예비군대대) ① 대대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선발되어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 자로 보한다. (개정 2012. 7.22)

② 예비군 대대본부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의 2 (삭제 2014.11. 1)

제19조의 3 (삭제 2014.11. 1)

제19조의 4 (삭제 2014.11. 1)

제19조의 5 (연구지원센터)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6급(주사)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② 연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1]

제 7 장 부 설 기 관

제20조 (부설기관) ① 본교에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 어학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9. 3. 1, 2019. 7. 1, 2020. 5. 1)
② 부설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6급(주사) 이상, 계장은 7급(부주사)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7.22, 2018. 4. 1, 2024. 2. 1)
③ 각 부설 기관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3. 1)

제 8 장 위 원 회

제21조 (위원회) ① 본교의 학사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자문기관으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2.13)
② 각 위원회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22조 (보직교원의 임기) 각급 보직교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부서의 신설 · 통합 · 폐지) 총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해 법인 이사회의 승인과 이사장의 재가를 득하여 소관부서를 신설, 통합, 폐지할 수 있다. 단, 특정 사업을 위한 한시적인 조직의 경우에는 총장이 신설 또는 폐지 후에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2019. 7. 1)

[제목개정 2019. 7. 1]

제24조 (사무분장) 본교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3조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임용 중인 시간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이미 임용된 자는 그 임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3. 2. 1, 2014. 1. 1, 2014. 5. 1, 2014.11. 1, 2015. 2. 1, 2015. 5. 1, 2016. 9. 1, 2017. 7. 1, 2018. 4. 1, 2018. 6. 1, 2019. 1. 1, 2019. 3. 1, 2019. 4. 1, 2019. 6. 1, 2019. 7. 1, 2019.11. 1, 2020. 1. 1, 2020. 5. 1, 2020.11. 1, 2021. 1. 1, 2021. 4.15, 2021. 7. 1, 2022. 3. 1, 2022. 5. 1, 2022. 7. 1, 2022.10. 1, 2022.12. 1, 2024. 2. 5)

기구표

